

인천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7가단250669 판결 [보증금지급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훈

피 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서진권

변론 종결 2019. 3. 27.

판결 선고 2019.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3,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9. 5. 15.까지는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666,196원 및 이에 대한 2016. 6. 8.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학교법인 D(이하 'D'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E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12. 21.부터 2016. 1.31.까지, 계약금액 20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2. C과 사이에 계약이행기일 2016. 1. 31., 보증기간 2015. 12.21.부터 2016. 4. 30.까지, 보증금액 202,400,000원으로 정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C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 사고'라 한다)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원고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7조(보증사고 발생시 기성인정 기준)

제3조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금액은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

리자)가 C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한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88,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114,400,000원(=202,400,000원 - 88,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시 기 일	지 급 금 액
1	2016. 2. 3.	22,000,000원
2	2016. 3. 4.	44,000,000원
3	2016. 5. 19.	6,000,000원
4	2016. 5. 19.	16,000,000원
합 계		88,000,000원

라. C은 2016. 5. 19. 춘천지방법원 2016회합501호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절차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114,400,000원 전액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7. 12. 28. 4,733,804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약관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원고의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으로서 그지급기일이 보증기간의 말일 이전에 도래하는 대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보증금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갑 제1호증, 갑 제1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일인 2015. 12. 21.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시작하여 그 시공을 완료한 사실,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준공이 2016. 2. 15. 이루어진사실, C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채권은 전액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료 이후 C이 공사 지체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42일 단기간의 공사인 관계로 C에 대한 월별 기성신청서가 없고, 원도급의 발주자인D가 C의 공사이행 기성고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한 기성검사조서의 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준공일인 2016. 2. 15.에는 이 사건하도급공사도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2015. 12. 21.부터 2016. 2. 15.까지 총 57일간 실제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 중 이 사건 보증계약의 계약이행기일까지의 기간(총 42일)에비례하는 공사대금인 149,136,842원(=202,400,000원 × 42일/57일, 원 미만 버림, 이하같음)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C로부터 변제받은 총92,733,804원(=88,000,000원 + 4,733,804원)이 이에 일부 충당되어 피고가 지급하여야할 보증금은 56,403,038원(=149,136,842원 - 92,733,804원)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6,403,0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2019.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실제 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만 피고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데,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발행일자를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시공물량이 대부분이고,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물량은 이미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C에게 2015. 12. 31. 33,000,000원, 2016. 2. 25. 33,000,000원, 2016. 3.

25,220,000,000원, 2016. 5. 13. 114,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세금계산서 발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발행일자를 실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시공일자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즉, C의 D에 대한 기성신청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잔토처리 공사대금 3,802,921원은 보증기간 개시 전에 이루어진 공사로 발생한 것이고, 포장공사와 성토공사대금 합계 144,789,949원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계약이행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의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공사대금 53,807,130원은 제15회 원도급 기성청구일인 2015.12. 15.부터 제17회 원도급 기성청구일인 2016. 2. 12.까지 이루어진 시공금액이므로 피고의 책임기간인 42일 범위로 일할 계산한 37,664,991원만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금액은 원고가 이미 C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한 기성신청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성신청서가 C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D의 이사장이었던 F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의 전 대표이사 G와 적정한 금액보다 15억 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기성신청서는 실제 하도급공사의 시공물량, 기성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기성금 청구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기성기간도 알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각 기성신청서를 기초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